

바. 복직절차

- 1)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①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②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등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,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.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
- 2)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 (동일일자로 처리).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
- 3)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

사. 기타

- 1)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
 - 가) 경력평정: 미산입
 - 나) 호봉승급: 승급기간에 미산입
- 2) 결원보충: 결원보충 안함
- 3) 보수: 봉급·수당 모두 지급 안함. 단,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·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